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김학역 편집인 최경환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두언

안전사회를 위한 경찰의 역할

국회의원 윤재옥

연구특집

범죄취약지역 집중순찰의 효과성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창배

민영교도소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충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영재

탈북민 위장 간첩의 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윤영

치안현장탐구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분석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사 서은하

치안정책동향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를 누비는 이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위 최혁두

입법·판례동향

2014년 3~4월 국내외 입법·판례 동향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안전사회를 위한 경찰의 역할

국회의원 윤재욱



일등 치안, 꼴찌 경찰?!

경찰의 사회 치안 확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 덕분에 강력범·폭력범 검거율은 80%를 넘어 90%에 육박하고 있고, 수범이 다양해지고 있는 지능형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 또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는 국가안보가 가장 큰 사회의 불안 요소로 꼽힌 반면, 2012년에는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국가안보보다 무려 10%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범죄통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경찰이지만, 이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체감도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크고 심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1등 치안, 1등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찰은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안전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찰 R&D 法」 추진

저 또한 경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우리 경찰이 선진일류 경찰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 정부 사회안전분야 실천방안'이라는 주제의 릴레이 정책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토론들을 바탕으로 준비한 일명 '경찰 R&D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법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안 관련 과학기술이나 첨단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수범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등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서 경찰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범죄 위협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안 관련 과학기술이나 첨단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조사, 기술개발 등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업무와 관련된 과학기술은 상업화를 시키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고, 그 개발 실적도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경찰업무와 관련된 그 어떤 법률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법을 개정해서 경찰이 R&D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안대학원 설치法」 추진

치안분야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 및 발전과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개정법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흉악범죄,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및 조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환경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걸맞은 교원 역량 확보를 위하여 경찰대학 교원의 신분 관계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경찰의 역할

박근혜정부는 4대약 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는 등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각종 범죄 사건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SNS 등에서는 괴담수준의 허위 정보가 보태져서 전파되고 있는 등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경찰의 존재가 안도감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치안업무를 가장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자체적으로 끝내지 말고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가족 모두가 본인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그 동안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안전사회 구축의 수호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경찰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SI**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R&D) 예산 출연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경찰법」 주요내용은 제8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이 신설되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안 제26조 제1항)하게 하고,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안 제26조 제3항).

개정된 「경찰법」은 5월 중에 공포, 11월 중 시행 예정으로, 그간 소외되었던 국민안전과 민생치안 분야 기술·장비 개발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범죄취약지역 집중순찰의 효과성¹⁾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창배

서론

이 연구는 미국의 텍사스 주 달라스 경찰국에서 범죄취약지역(hot spot)의 집중순찰을 목적으로 운영한 특별기동팀(disruption unit)의 활동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범죄이론들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자들의 교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지만, 그에 대한 성과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이에 반해,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해자 측면의 요소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공략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중 일부는 범죄와 지리적 환경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범죄가 넓은 지역에 골고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지역에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범죄취약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 노력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단순히 경찰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도 있었고, 그 외에 집중순찰, 집중적인 불심검문, 사소한 무질서에 대한 엄격한 대응, 정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유형의 경찰활동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의 달라스 경찰국에서 운영한 특별기동팀(Disruption Unit)의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찰활동이 범죄발생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불심검문, 경고장 발부, 체포 등의 경찰활동이 중대범죄(index crime) 발생건수의 총합계는 물론, 대인범죄, 대물범죄, 경범죄 등의 발생건수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였다. 중대범죄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에서 범죄통계를 수집할 때 주요범죄 유형으로 설정한 8가지를 말하며,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등의 대인범죄와 주거침입절도, 자동차 절도, 고액절도(\$50 이상), 방화 등의 대물범죄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의 경범죄는 약물소지나 거래행위,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매춘 등의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연구방법

연구자들이 관찰한 달라스 경찰국의 특별기동팀은 관리자를 포함하여 24명의 경찰관들로 구성되었고, 매일 평균 12-18명의 경찰관들이 순찰에 참여하였다. 기동팀은 달라스 시의 비교적 광범위한 관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순환형태의 순찰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기동팀이 한 지역에 출동하면 2~3시간 동안 그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야간에만 10시간(18:00 ~ 4:00) 동안 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 순찰지역은 지난 2주간의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이 기

1) 장현석·이창배·Larry Hoover(2012).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5권 3호에 게재되었음.

동팀은 각 지역에 할당된 기존의 순찰인력 이외에 경찰국에서 추가적으로 매일 투입하는 인력이었다.

연구자들은 기동팀이 일정기간동안 수행한 순찰의 효과성을 관찰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실시한 불심검문횟수, 경고장 발부횟수, 체포 횟수 등과 한 주간 그 지역에 출동한 횟수를 경찰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범죄발생건수(대물범죄, 대인범죄, 경범죄, 중대범죄총합계)를 결과물(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범죄발생건수는 순찰지역별(patrol sector)로 한 주간 발생한 범죄의 수를 측정하였고, 측정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96주간의 범죄발생건수를 수집하였다. 또한, 경찰력 집종의 범죄억제효과를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 기동팀이 투입된 한 주 동안의 범죄발생건수와 그 다음 주의 범죄발생건수를 구분하여 각각 관찰 및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순찰구역별로 96주간의 범죄발생건수를 포함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에 위계일반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ing, HGLM)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특별기동팀은 관찰기간동안 총 27개의 순찰구역에 경찰력을 집중하였고, 각 순찰구역당 96주간의 범죄발생건수를 수집하여 총 2,592건의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의 결과, 연구자들은 달라스 경찰국의 특별기동팀의 집중순찰활동이 해당지역에서 한주 동안 발생한 대인범죄, 경범죄, 중대범죄(index crime)총합계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지만, 대물범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서 집중순찰을 수행한 다음 주의 범죄발생건수에

는 유의미한 효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별기동팀이 수행한 경찰활동은 차량 및 보행자 불심검문, 경고장 발부, 범인 체포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심검문 횟수가 대인범죄, 경범죄, 중대범죄의 발생건수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 외의 활동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논의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달라스 경찰국은 비교적 제한된 경찰력을 활용하여 대도시 규모인 달라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취약지역 집중순찰을 수행하려고 노력했고, 그에 대한 일시적인 억제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미흡했다고 할 것이다. 집중순찰활동이 지속적인 억제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점은 특별기동팀의 인력이 20여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에 순환형태의 순찰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대상 지역에 경찰력의 증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소규모의 기동팀이 달라스 지역의 27개 순찰구역에 출동해야 했기에 구역별로 경찰력이 투입된 기간에 다소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몇몇 순찰구역의 경우 전체 연구기간동안 기동팀이 1~3번 출동한 것이 전부였다. 결국 추가적인 경찰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했기에 그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 중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경찰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순찰할 때 굳이 경고장 발부나 범인 체포와 같이 강압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이나 혹은 경찰력의 가시성을 증대하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범죄억제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PSI**

민영교도소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영재

서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바람은 기존의 국가가 운영하는 서비스보다 효율성과 우수성을 나타내며 공공부문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바람은 국가의 독점적 권력으로 간주되었던 교정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수용자에게 더 좋은 처우와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이루어내 재범률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재범률이 60%를 상회하며 정신적·물질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에 대한 무관심과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교정시설의 개선 및 교정사업운영에 대한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법무부 ‘교정현대화추진단’의 개혁정책으로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2010년 12월 1일 개소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첫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 및 교정교화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확인해보고, 국영교도소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 민영교도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영교도소 교도관 및 수형자 실태조사

국내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 104명과 수형자 25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교도관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현재 교도관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특별히 위험하다고 지각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급여, 금전적·사회적 보상, 승진기회에 대해서는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교도소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화 및 사회복귀에 효과적이고 수형자가 가장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으로 집중인성교육과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을 꼽았다.

소망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과반수의 교도관이 현재 소망교도소가 설립 당시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으며, 국영교도소에 비하여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망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하여 민영교도소의 특성을 살리기가 힘들므로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망교도소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하며,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민영교도소의 추가 설립 및 국영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하여 과반수의 교도관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교도관은 교도작업에 따른 수입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출소 후 재범가능성에 대하여 과반수의 교도관이 재범률이 낮을 것이라고 응답하

였다.

직무위험에 대하여서는 보안이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즉, 수형자와 접촉이 있는 교도관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에 비해서 직무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역할갈등, 직무위험,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상사·동료·수형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수형자의 재범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민영교도소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국영교도소의 수형생활 만족도와 비교해보았다. 우선 수형생활 전반, 종교생활, 의복, 식생활, 교도관의 태도, 다른 수형자와의 관계 및 공동생활, 생활공간 및 시설 전반, 공동시설, 생활공간의 넓이 및 위생, 접견실 및 민원관련 시설, 강당 및 운동장, 냉·난방 시설, 운동 시간 및 종류, 교화활동 전반에서 민영교도소가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의무와 진료에 대해서는 민영교도소에서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소망교도소 내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집중인성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망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과반수의 수형자가 소망교도소가 재범률 감소

에 효과적이며 추가적인 민영교도소의 설립이나 국영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다수의 수형자가 소망교도소가 초기의 설립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급여 등 처우부분에 있어서 국영교도소 직원과 대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의무와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외부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하여 의무적인 정기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과제빵, 바리스타, 자동차 정비 등 출소 후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간적 제약,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국영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육이감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범률 감소를 위하여 집중인성교육과 같이 소망교도소만의 특화된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종교계의 민영교도소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형자들의 개인적 종교이념을 기반으로 한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으며 올바른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지역주민의 채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도소 내 프로

그럼 개발, 교도소 내 사용되는 다양한 소모품 및 식품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하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제공하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사회로부터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권력적 업무에 해당하는 보호장비, 무기사용 등은 현재와 같이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권력적 업무에 해당하는 서무, 경리, 유지관리, 직업훈련, 교육, 분류심사 등의 업무는 민영교도소 직원에 의해 특별한 규제 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독관의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여 민영교도소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교도소 내 교도관과 수형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재 소망교도소는 252명의 수형자가 출소하였고, 그 중 5명만이 재범을 하여 약 2%대의 낮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다.²⁾ 또한 운영초기 교도관의 처우 등의 문제로 19%대의 높은 이직률이 나타났지만, 현재 12%대로 떨어져 개소초기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소망

2) 2013년 11월 기준

교도소가 민영교도소서 성공했다고 평가받기에는 운영기간이 짧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현재의 재범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교정 분야의 거대한 민영화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강소영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374 (경비) 61-2374
 • e-mail : webmaster@psi.go.kr

탈북민 위장 간첩의 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 김 윤 영

들어가는 말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월 현재 26,483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탈북민들의 북한실상 폭로가 체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탈북민 단속을 위해 단순 월경자까지 반국가범죄로 처벌하며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남공작부서는 한국행 탈북민 속에 탈북민으로 위장시킨 간첩을 남파시켜 대남공작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2008년 원○○가 정보당국에 검거된 이후, 황장엽 암살조 동○○·김○○, 이○○, 김○○ 등 20여명의 탈북민 위장 간첩이 검거된 바 있다.

김정일 탈북민 위장 간첩 남파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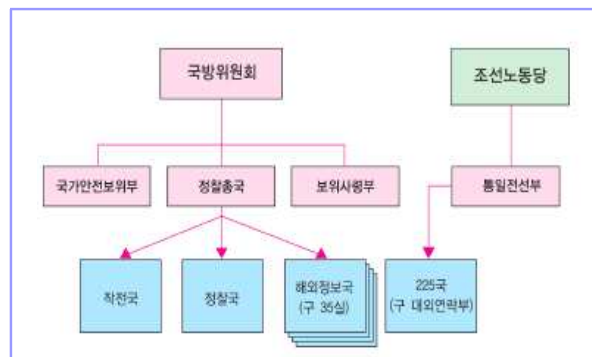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이 탈북한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여 정착하는 모습을 보고, 안정적인 대남공작 루트 중 하나로 탈북민으로 위장한 간첩 남파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2004년 3월 “남측의 심리전에 반공격적으로 대처하자”라는 당 중앙위원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조선 도피주민(탈북민) 속에 우리의 공작 인원을 침투시켜라” 지시했고, 이를 계기로 대남공작부서는 탈북민 위장 간첩 남파 활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탈북민 위장 간첩 남파 대남공작 기구

최근 북한은 전통적인 대남공작부서인 ‘255부’(구 당 대외연락부)를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직속 대남공작부서인 ‘정찰총국’(당 작전

부, 35호실, 군 정찰국 통합부서), 반탐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총 동원하여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탈북민의 국내 입국 루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남파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목적상 한국과 중국 또는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을 체포한 후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를 가족을 불모로 하여 대남공작원으로 포섭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 대남공작 기구>



출처: 치안전망 2014, 233쪽.

탈북민 위장 간첩의 주요 임무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에 포섭된 위장 탈북민 간첩은 탈북민의 국내입국 루트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침투한다. 이들은 합동신문과 하나원에서의 사회정착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에 정착하면 잦은 이사와 이직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정보기관이 거주지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후, 북한이 지령한 국가 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민의 북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민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고정 간첩과의 연계, 위폐전환, 재미교포 유인, 사회혼

란 유언비어 조작 유포, 친북성향 인물 회유 율북, 이산가족 명단 수집, 군사기밀 탐지, 전략물자 구입과 산업정보 유출, 북한 선전물 유포 등 다양한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 한다.

탈북민 위장 간첩 검거 사례

공안당국은 지난 10년간 50여 명의 간첩을 구속했고, 이 중 40.0%인 20여 명이 탈북민 위장 간첩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탈북민 위장 간첩의 경우 국내정착 탈북민을 대상으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다 체포되었다. 2012년 탈북민의 재입북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 2013년 탈북민을 복송한 혐의로 구속된 채○○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총국은 탈북민 위장 간첩 남파를 통해 고위층 출신의 탈북민을 암살하는 임무를 지령하고 있다. 2010년 남파된 경찰총국 소속 간첩 3명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시도했고, 2011년 남파된 경찰총국 소속 안○○은 탈북민 출신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의 살해 임무를 맡고 활동하다 검거된 바 있다. 2014년 구속 기소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는 탈북브로커 유○○를 유인·납치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되었다.

<간첩사건 구속 현황>

구분	계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현정부
간첩	50명	14명	31명	5명
탈북민 위장 간첩	20명 40.0%	3명 21.4%	14명 45.2%	3명 60.0%

출처: 치안전망 2014, 233쪽.

전망과 대책

북한당국은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대남공작 활동을 위해 국내정착 사회 부적응 탈북민, 북한과 중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민, 북·중 왕래 보따리 장사, 강제송환 탈북민 등을 포섭하거나 직접 양성한 탈북민 위장 간첩을 남파시켜 국내정착 탈북민 간 갈등 조장, 국민과 탈북민 간 이간, 요인테러, 각종 기밀 탐지,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혼란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민 위장 간첩의 지속적 침투는 탈북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탈북민 위장 간첩이 입국한 후, 합동신문과 정과 거주 신변보호 기간만 끝나면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민에 대한 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검증 과정에서 탈북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탈북민의 효율적인 신변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고, 가칭 ‘탈북민 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경찰청 보안국 내에 탈북민은 물론 국외체류 탈북민을 지원·관리하는 1개과를 신설할 수 있다. 가칭 ‘탈북민 지원과’에서는 탈북민 관리(1계), 탈북민 합신 및 수사(2계), 재외탈북민 지원·관리(3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민 중 잦은 주소지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심층 내사로 위장 탈북민 간첩을 색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합동신문절차 개선, 탈북민 위장 간첩 식별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제작 활용, 탈북민 국외체류 국가 신문요원(신변보호 경찰관) 파견, 신변보호 경찰관과 신문요원 증원 등도 필요하다.

탈북민 위장 간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탈북민들의 사회정착 적응에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통일의 매신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PSI](#)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유형 분석 - 근거이론(Grounded Theroy)에 의한 접근 -



경기도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사 서은하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2,000명을 웃돌던 북한이탈주민 수가 2013년은 1,500여 명에 그쳤다. 3,000명에 육박했던 5년 전에 비하면 반 토막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감소가 북한이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의 국경통제가 1990년대 이후 상시적으로 강화되어 온 것을 감안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에는 자연재해나 질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으나 현대인들에게는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내인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명단이 통째로 북으로 유출되는 등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간 검증되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보다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반응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근거이론(Grounded Theroy)의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조사 설계 및 방법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한 양적 방법론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련된 설문은 예민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양적 방법의 연구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근거이론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형성된 과정, 행동,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론)을 창출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서의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3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그 중 1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국내 입국 기간은 평균 10.2년으로 최소 4년에서 최대 32년까지였고 북한 거주 기간은 평균 34년으로 최소 12년에서 최대 51년이며, 해외 체류 기간은 평균 2.6년으로 최소 0.7년에서 최대 4.3년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8명, 여성이 7명이었고 재북 가족이 있는 경우가 8명, 가족이 없는 경우가 7명이었다.

면접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된다. 첫째,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둘째,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지,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될 것을 염려하는지를 질문하였고, 셋째,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 행동들을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가 사회 적응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국내 거주 기간과 재북 가족 유무에 따라 염려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지에 관해 질문의 중심을 두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녹음된 자료는 녹취하여 원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절차는 Struss와 Corbin이 제시한 분석 단계인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고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에 개방 코딩을 한 결과 총 178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다시 축약 분석 과정을 거쳐 총 96개의 개념을 새롭게 분석하였으며 96개의 개념들을 추상화하여 17개의 하위범주를 구성하였고 이를 다시 7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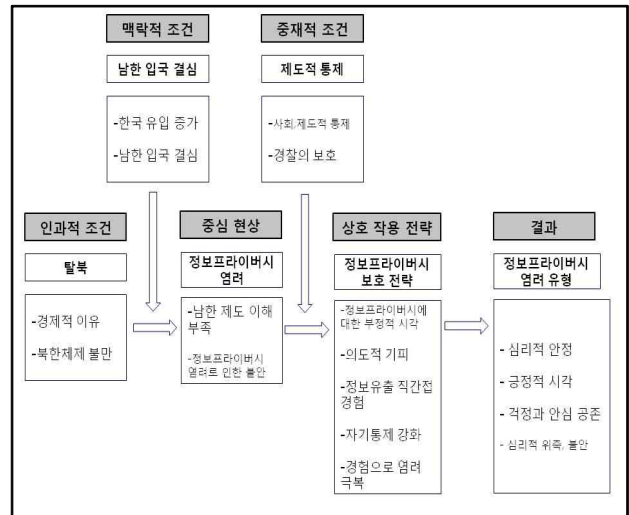
<표 1> 개념의 범주화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탈북	경제적 열악	먹고 살기 힘들, 배고픔, 돈을 벌기 위해 탈출, 가정 불화, 가난의 대물림
	체제 고민	외로움, 불안함, 북한에 대한 증오, 체제 불만, 처벌 우려 동반 탈출
남한입국	한국유입 증가	탈북자 증가, 자유로운 삶, 새로운 삶 동경, 남한 사회가 잘 산다는 우월감
	입국 결심	남한 동경, 남한사회 호기심, 남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 선망의 대상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제도 부지	관련 정보·남한 문화 이해 부족, 정보보호 관련 제도 부지, 정보 제공 반감
	정보노출 불안	불안감, 노심초사, 경계, 해코지,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 생사와 직결, 가족에 대한 보복, 위협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제도적 통제	제도적 통제	다양한 정보통제망·사전 차단 기능 존재, 법으로 보호, 제도적으로 보장
	경찰의 관리	사람들의 편견을 무시, 불안감 희석, 격려로 자신감 회복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	정보유출 직접경험	소수자, 행동의 제약, 언론 보도 예민, 불미스러운 일, 간접 경험, 내향적, 적대적
	부적응	접촉을 회피, 직장·사회생활 거부, 허드레 일
	의도적 기피	행사 불참식, 단체·모임가입 거부, 개인 정보 기재 거부, 외부 활동 자제, 사진 촬영 거부
	자기 통제	말투와 스타일을 개선, 연락처 변경, 개명, 성형, 주민등록번호 변경
	다양한 경험	대외 활동, 경험 등을 소통, 남한인과 교류 강화, 사회생활을 통한 정체성 회복, 인내심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하여 개방 코딩에 의한 근거자

료 범주화와 축 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범주 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 정착 과정에서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요인들을 통하여 유형화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축 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패러다임 모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유형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실체에 대하여 각 범주들을 연결하는 선택 코딩을 통해 이야기 윤곽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중심 현상인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추상적이고 정형화하기 어려운 이슈를 실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는 종래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심리학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즉,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지된 통제는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감소시키므로 정보투명성을 통해 향상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식은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지된 위험을 낮추는 통제 매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정보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으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요청에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Malhotra, et al, 2004)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정보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참여자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이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입국시기 등 인구학적 변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전략, 즉,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개인의 적극성, 자기 주도적인 노력 여하, 신변보호경찰관의 관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2>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유형

유형	내용
심리적 안정 유형	입국이 길수록, 즉 북한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개인정보와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도가 낮음
긍정적 시각 유형	재북 가족이 없는 경우가 해당, 이들은 중심 현상인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한 불안 요소 중의 하나인 가족이라는 위험요인이 없어 염려도가 낮음
걱정과 안심 공존 유형	장년층(4~50대)이 해당, 이들은 입국 이후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무관심, 차별·적대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의 해석 방식을 굳게 고집하고 남한에서의 변화된 문화와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염려도가 높음
심리적 불안과 위축 유형	중년층과 재북 가족이 있고 입국시기가 짧은 층이 해당, 북에 두고 온 혈육에 대한 죄책감, 응화되지 못하는 좌절감 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언론에서 접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프라이버시 유출 사례 간접경험으로 인해 염려도가 높음

맺는 말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나이와 입국일자와 같은 개인별 변수들이 매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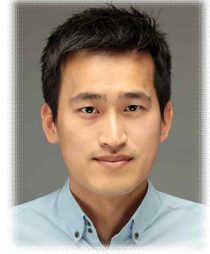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고 입국일자가 빠를 수록, 그리고 재북 가족이 없을 수록 ‘남한화’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정보프라이버시 염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정도와 이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도는 사회적 정책, 개인별 노력, 신변보호경찰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동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한 이후 신변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도에 따라 대인관계 또는 사회생활의 양태가 변화되므로 나이, 입국일, 재북가족 유무 등에 따라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분화된 신변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유형에 따른 신변보호 차별화, 둘째,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전담조직 구성·운영, 셋째,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유형에 따른 신변보호경찰관의 의식 제고, 넷째, 관련 학회와 경찰과의 교류 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신변보호경찰관 증원 및 보안협력위원회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PSI](#)

※ 이 글은 필자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연구 - 유형별 경찰의 사회적응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2014)를 요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를 누비는 이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제협력팀 경위 최혁두

“작년에 소지섭 나오는 ‘유령’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뇨.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요?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서...”

‘아... 소개하려면 한참 걸리겠네...’

사람 만나는 일이 잦아지다보니 내가 근무하는 곳,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아니 6월에 사이버안전국으로 정식 개국하니 사이버안전국)에 대한 레퍼토리를 되뇌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찰에 사이버범죄 담당부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적다보니 첫 만남부터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은 내가 사이버안전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저는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어서 외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경찰과 협력할 일이 많아요.”

“경찰이 외국갈 일이 있어요? 그냥 나쁜 놈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늘 또 입 아프게 생겼네...’

경찰이 아직도 맨손으로 나쁜 놈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맞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나쁜 사람을 잡는 것’이다. 다만, 잡는 방법이 스마트해졌다. 그동안 발생한 사건을 분석하여 범죄위험 지역과 범인의 거주지를 예측하여 수사를 한다거나, 피의자의 컴퓨터

나 스마트폰을 확보, 분석하여 피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식이다. 과거 톰 크루즈Tom Cruise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나 나오던 ‘미래 예측을 통한 범죄 대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시대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사이버 상에 연결되어 있는 편리한 사회인 것이다. 다만,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훨씬 복잡다단해졌다. 특히, 사이버세상이 등장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사이버 세상에는 국경이 없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떻게든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면? 국내 경찰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해결이 안된다. 가령, 미국의 해커가 우리나라 국가기관을 해킹했다고 하자. 우리가 미국인 해커를 특정했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경찰을 움직이면 된다.

사이버경찰이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다. 사이버안전국은 매년 10여회 국제회의에 참가하며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국제회의에서 만나 직접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애환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각국 경찰간 라포(Rapport)는 사이버범죄 해결의 열쇠가 된다.

필자도 금년 3월 영국 경찰청에서 주최한 e-Crime Congress에 참석하였다. 기존의 영국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SOCA)에서 국가범죄수사청(NCA)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변화된 조직 구조를 파악하고, NCA에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NCA도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매 회의 때마다 사이버부서 직원 대부분을 참석시켜 각국 법집행기관 참가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그런데 각국의 사고방식이 달라서일까? 각국의 회의 주최방식은 나라마다 특색이 있다. 일본경찰은 무미건조한 주입식 스타일로 회의를 진행한다. 수십 명이 빼곡히 들어간 재수학원의 교실처럼 좁은 공간에 각국 참가자를 몰아넣고 강의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미국은 규모와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연사를 여럿 초청해 여러 세션을 동시 진행하여 참가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션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론 진행 중에 질문이 나오다보니 어젠다 상의 발표시간을 초과하여 끝나기 일쑤다. 영국경찰은 검소하다. 이번 회의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것은 샌드위치 달랑 하나였다.

이렇게 형성한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인연을 통해 3.20 방송·금융망 사이버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나라가 발각 뒤집혔을 때 FBI 측으로부터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6.25 사이버테러사건, 중앙일보 해킹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국가와 신속히 공조할 수 있었고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얼마 전에는 이메일 사기로 홍콩계좌로 넘어간 현금을 절친한 홍콩경찰과

공조하여 계좌동결, 피해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거둬 받기도 하였다.

2020년 어느 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저는 사이버안전국에서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아... 옛그제 뉴스 봤어요. 나이지리아 경찰이랑 협조하여 OO은행 해킹한 나쁜 놈 잡은 부서, 거기서 일한다는 거 맞죠?”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2014년 3~4월 입법 및 판례 소개

국내 주요 입법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 대통령령 제254240호, 2014. 3. 11. 일부개정 및 시행 / 인준행정부령 제63호, 2014. 3. 28. 일부개정 및 시행

- 주요내용
 - 경찰청 본부에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하고(50명 증원), 경찰청 소속기관에 성폭력·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및 112신고 접수·지령요원 등 1,690명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2550호, 2014. 3. 27. 전부개정, 2014. 9. 28. 시행

- 주요내용
 -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현행 지원센터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던 자활지원센터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자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2495호, 2014. 3. 18. 일부개정 및 시행
- 주요내용

-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PMMA 등 신종 흥분물질은 기존의 마약류와 같이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므로 오남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 최근 이러한 신종 흥분

물질을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예고 단계부터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법률 제12424호, 2014. 3. 18. 일부개정 및 시행
- 주요내용

-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킴.

● ‘청소년 보호법’

- 법률 제12534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주요내용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되, 경마나 경정·경륜이 개최되지 아니하는 날은 제외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함.
 -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및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제2528·9호 2014. 4. 3.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범죄처벌법 및 동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함.

국내 주요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 모욕]

- 사건의 개요

· 국회의원이었던 갑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녁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 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 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xxx대 이상은 자 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이에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A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이 모욕 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갑을 고소하였다.

- 판결요지[파기환송]

·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공 소사실에 따르면 여성 아나운서 집단에 속한 개개의 여성 아나운서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비난의 정도가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한다.

· 그런데 A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는 295명이고 이 중 154명만이 수사기관에 고 소하였으며, 여성 아나운서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 고,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그 중 피고인을 고 소한 여성 아나운서들이 속한 A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결(모욕죄의 유죄)에 법리오 해의 위법을 인정하고 판결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한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판결요지[파기환송]

· 이 사건 범죄는 2007. 8. 6.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질러진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으로서,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이 정한 등록·열람 요건을 충족하지 한다. 따라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 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의 소급규정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새롭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들의 범 행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혹은 일 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 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 야 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갑은 2011년 8월 27일 오후 10시 경 대학생, A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P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한 채 ‘B를 구속하라’는 등 의 구호를 외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신고 시 위임을 이유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 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판결요지[파기환송]

·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갑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 결정(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 갑은 2008년 6월 25일 오후 7시 15분 경부터 같은 날 밤 9시 50분 경까지 덕수궁 앞 및 세종로 일대에서 주최된 A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제청신청인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12월 7일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한편 제청신청인 을은 2008년 5월 26일 오후 6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9시경까지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B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계속 중 제청신청인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며, 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2년 5월 8일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결정요지[한정위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2헌바373 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P경찰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인데,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P경찰서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제1평정요소(객관평가) 및 제2평정요소(주관평가)의 점수내역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P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5항 등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에 P경찰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은 제1평정요소(객관평가)의 점수내역에 대한 P경찰서장의 정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아울러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5항 부분은 각하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요지[합헌·각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이는 인사관리업무 및 그 정보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한 비록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의 대강을 확정할 수 있는데다가 그 구체적 의미는 법원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서 법집행자가 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다.

●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2헌마652 결정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 A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구인 갑을 K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하면서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갑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갑이 K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각 언론사는 이튿날 갑의 범죄사실에 관한 뉴스 및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갑을 ‘정모씨(36세)’ 등으로 표현하였고 갑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방송되었다.

· 청구인 갑은 피청구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요지[인용(위헌확인), 각하]

· 피청구인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부적법 각하한다.

해외 입법동향

●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U.K)

- 2014년 3월 13일 제정
- 주요내용

· 영국 및 웨일즈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삶의 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소란 행위, 무질서 그리고 범죄행위로서의 ‘반사회적 행동’이 하루 평균 6300여 건 발생하고 있다. 본 법은 ‘피해자를 최우선에 두자’는 이념 아래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의 지속 발생을 막기 위해 1)민사배상명령, 2)형사처벌, 3)경찰의 개입권한, 4)공동체 보호고지(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 시행), 5)공공장소 보호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연방 법률정보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uk/ukpga를 참조> **PSI**

(정리: 수사구조개혁연구실 연구관 김현숙)

연구소 소식 및 연구관 동정

연구소 소식

◆ 연구소는 3월 14일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의지 제고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연세대학교 이원용 교수를 초빙하여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연구관 및 경찰대학 교수, 교수요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 연구소는 4월 9일 ‘2014년 정책연구과제 주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공모한 정책연구 예비주제 14건에 대하여 용역연구과제 수행의 타당성 및 연구 경비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014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 연구소는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2013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위촉·용역)를 공모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2014. 4. 15(화)~4. 28(월) 기간 동안 연구자를 공모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결정하며, 결과는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 공고하고, 아울러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연번	제안 주제
1	현장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대한 연구
2	국민참여 범죄증거자료 제보시 보상 지원 표준화 연구
3	벌금미납자에 대한 집행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4	아시아지역 사이버범죄 대응 공동 협력모델 연구
5	경찰관의 안전보호 전략 및 SOP개발
6	치안분야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
7	경찰대학 직무과정 현업적용도 측정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8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운영 방안

연구관 동정

◆ 강소영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3월~4월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80기 신입순경과정 대상 “피해자의 이해와 보호”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4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대구한의대)에서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발표(우수학술상 수상)하였다.

◆ 정웅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3월 28일 한국치안행정학회 춘계학술세미나(부산 동명대)에서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하여 “불량식품 사건발생 실태와 위해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동 연구에 대한 학술발전공로를 인정받아 학회로부터 『2014년도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김현숙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4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대구한의대)에서 토론하였다.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경찰관 중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께서는 학위논문 1부를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 인사

◆ 4월 23일 치안정책연구소 운영계장 이준호 경정과 치안정책연구소장 부속실 박경열 경사의 승진임용식이 있었다.



◆ 김대한 연구관(사회안정대책연구실)은 업무 지원을 마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UN-PKO)을 위하여 라이베리아로 파견되었다.

◆ 4월 30일 안보대책연구실 송경호 연구관이 명예퇴임을 하였다. [PSI](http://www.psi.go.kr)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동향’에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한 원고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연구소 전경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

